

보도일시	배포시부터		
배 포 일	2018년 6월 10일	담당부서	수신제도부, IT부
담당부장	박창옥 부장(T.3705-5326) 김응수 부장(T.3705-5314)	담당자	이종혁 부부장(T.3705-5718) 임영빈 부부장(T.3705-5291)

## ‘뱅크사인’은행공동인증서비스 추진 현황

- 은행연합회(회장 김태영)는 정부의 **블록체인\***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, **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시스템 적용**을 위해 사원은행과 함께 '16년 11월부터 **‘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’**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

\* **블록체인(Blockchain)**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,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, 검증, 보관함으로써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

- 동 컨소시엄을 통해,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**은행공동인증 서비스인 ‘뱅크사인(BankSign)’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, 오는 7월에 대고객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**

–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, 지난 4월말부터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도 진행

- **‘뱅크사인’은 공개키(PKI; Public Key Infrastructure) 기반의 인증 기술, 블록체인 기술,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한 인증 서비스이며,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첫 번째 공동 사업이라는 의의가 있음**

- '뱅크사인'의 장점

-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 방지
- 개인키(전자서명생성정보)를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하고 항상 휴대함으로써 개인키 복제, 탈취 및 무단사용 방지
-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 가능
-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 경감 등

- 한편, 뱅크사인 시행초기에는 은행권부터 이용을 시작하지만,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,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

□ 참고로, '뱅크사인' 도입 후에도 뱅크사인과 기존 공인인증서 모두 병행하여 이용이 가능함

-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('18.3.30.) 등에 따르면,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방침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\*를 없애고, 시장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임

\* 공인인증서에 무결성(전자서명 후 정보의 변경이 없음)을 부여하고, 법령에서 전자서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

□ 앞으로도 은행권은 블록체인,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금융시스템에 적극 활용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임

붙임: 뱅크사인 및 공인인증서 관련 참고사항 1부. 끝.

이 자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fb.or.kr>)의 '은행연소식' 과 '보도자료' 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.

## 뱅크사인 및 공인인증서 관련 참고사항

### 1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방침 관련

#### □ ‘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(‘18.3.30.)’ 주요내용

-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초기에는 민원행정, 금융,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적 업무처리 활성화 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
- 하지만,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전자서명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,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
  - 전자서명시장의 독점 초래,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 저해,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한 등

- 이에, 정부는 ‘공인’인증서의 우월적 지위\*를 없애고, 시장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추진
  - \* 공인인증서에 무결성(전자서명 후 정보의 변경이 없음)을 부여하고, 법령에서 전자서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

⇒ ‘공인’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전자서명시장을 발전시킬 다양한 인증기술이 허용되므로, 뱅크사인이 도입되어도 고객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 모두 병행하여 이용 가능

### 2 인증서 제도 유지 필요성 관련

#### □ 인증에는 ‘본인확인’과 ‘전자서명’ 두 가지 의미가 있음

- 본인확인은 단순히 행위당사자 본인을 확인(로그인)하는 것으로, ID/PW, SMS, ARS, 지문,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사용됨
- 전자서명은 행위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 외에 전자문서 등의 진위도 확인하는 것으로, 현재 공개키(PKI: Public Key Infrastructure)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(공인인증서 또는 사설인증서)이 사용됨
- 즉, 인증서는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모두 가능한 인증수단임
  - \* PKI 방식은 국제표준 기술로서 해외에서도 두루 사용

- 최근 무서명 거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, 서명이 요구되는 거래 또는 계약은 여전히 존재하며, 이러한 거래 등이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임

⇒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'인증서 제도' 필요

### 3 뱅크사인 이용채널 관련

- **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 가능**
  - 뱅크사인은 인증절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**스마트폰의 첨단기술을 활용**하므로 인증절차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
    - **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개인키(전자서명생성정보)를 저장**하여 해킹 등에 의한 복제 및 탈취 방지
      - \* 스마트폰 안전영역은 외부접근이 불가능한 저장공간으로 해킹 등에 안전하나, PC는 이러한 안전한 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해킹 등 위험에 노출
  - 한편, 뱅크사인은 **스마트폰에서 인증하여 PC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**
    - \* PC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휴대폰번호 입력 후 '뱅크사인으로 로그인' 선택 → 스마트폰 뱅크사인앱 활성화 → 비밀번호 등 입력 → PC 인터넷뱅킹 로그인 성공

### 4 뱅크사인 이용기관 관련

- 은행권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, 뱅크사인이 은행권 뿐 아니라, **정부 및 공공기관,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**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
- 특히,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, **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도 이용이 촉진**될 것으로 기대